

2025학년도 마장초등학교 학부모회(병설 유치원 통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장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마장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마장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 및 본교 병설 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유치원생 및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학부모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임원선출은 총회의 의결 사안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 폴리스**를 둔다.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의제,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회신한 경우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회장이 총회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임원의 선출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규정 재.개정안 발의
2.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 보고

3. 학부모회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임시총회 소집 요구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학년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학급 학부모회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학급 학부모회 대표 중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유치원 학부모회)

- ① 유치원 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유치원 각 학년 학급 학부모회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 ② 유치원 학부모회에서는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유치원 학부모회는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나 유치원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5조(학급 학부모회)

-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정기회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한다.

제16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7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 ②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 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 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